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정 2012. 8.22 개정 2014.10.28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인사규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사 직원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사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 제2조(고발주체) 직무 관련 범죄의 고발주체는 사장 또는 감사로 한다. <개정 2014.10.28.>
- 제3조(신고의무)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 제4조(고발대상) 공사 직원 및 공사 직원이었던 자가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고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 제5조(고발기준) 사장 또는 감사는 직무 관련 범죄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 1.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공금(물품 포함)을 횡령한 경우
- 2.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고 또 다시 공금을 횡령한 경우
-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 한 경우
-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사장 또는 감사는 직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혐의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특별감사를 거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 ②고발은 사장 또는 감사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행위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첨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처리 상황부" 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 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감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 제8조(수사협조) 공사는 고발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행위 증빙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직원이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대상 범죄 정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있다. <개정 2014.10.28.>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처리 상황부

일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고 발자			781	고발장	소시기(시 지해사하	기타
련 번 호		소속	직급 (직위)	성명	고발 일시	저 人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